

##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 순 서 >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년 상담통계

- 1) 연도별 상담현황
-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2%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8.4%
-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10명 중 5명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10명 중 4명은 대리인이 상담의뢰
-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 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3.9%
-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1%
- 8) 피해자 지원내용
- 9) 친족성폭력 피해 세부 통계
  - 9-1. 피해자의 96.4%는 여성, 그 중 아동과 청소년이 74.5%
  - 9-2. 가해자 성별은 97.9% 남성, 가해자의 72.9%가 성인
  - 9-3. 친부와 의부에 의한 피해 3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촌에 의한 피해 19.7%, 삼촌과 친형제에 의한 피해 15.3% 차지
  - 9-4. 청소년 피해 중 친족성폭력 피해 20.1%, 어린이 피해 중 49.9%, 유아 피해 중 55.5% 차지
  - 9-5. 피해 유형, 강간 32.8%, 강제추행 52.6%에 집중되어 있어
  - 9-6. 피해 지속 기간 : 1년 이상 피해가 21.8%, 5년 이상 피해 11.9%
  - 9-7.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4.3%, 상담 전 조치 및 대응은 35.7%에 그쳐
  - 9-8. 친족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제언
- 10)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세부 통계
  - 10-1. 피해자의 94.8%가 여성, 성인 여성은 84.1%
  - 10-2. 가해자의 92.3%가 남성, 성인 남성은 85.6%
  - 10-3. 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45.6%, 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20.9%
  - 10-4. 중복지해 발생 비율 높아 성폭력 외에 협박 10.3%, 폭행 6.0%, 명예훼손 및 모욕 6.7% 피해 동반
  - 10-5.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16.9%, 상담 전 조치 및 대응은 45.6%에 그쳐
- 11) 스토킹 피해 세부 통계
  - 11-1. 피해자의 89.8%가 여성, 97.8%는 성인여성
  - 11-2. 가해자 89.8%가 남성, 성인 남성은 87.8%
  - 11-3.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3.8%, 전 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 69.2%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관계가 14.2% 뒤이어
  - 11-4.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 행위가 동반되어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경향 보여
  - 11-5. 피해 지속 기간: 3개월 이상 피해 지속 38.7% 차지
  - 11-6. 법적인 대응 14.2%, 상담 전 조치 대응 53%
  - 11-7. 스토킹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제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6년 동안 총 79,748회의 상담을 해왔다. 2016년 전체상담은 2,224회(1,501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070회(1,353건)으로 전체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0.1%이다. 본 상담담소가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단순 성상담 등 기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이다.

### 1) 연도별 상담현황

〈표.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총	79,748	53,034	44,479	83.86

##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2%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353건 중 1,267건(93.6%)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 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964건(71.2%)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도 평균 5% 선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올해는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64 (71.2)	168 (12.4)	87 (6.4)	33 (2.4)	15 (1.1)	1,267 (93.6)
남	61 (4.6)	11 (0.8)	5 (0.4)	3 (0.2)	1 (0.1)	81 (6.1)
미상	2 (0.1)	0 (0.0)	0 (0.0)	0 (0.0)	3 (0.2)	5 (0.3)
총계	1027 (75.9)	179 (13.2)	92 (6.8)	36 (2.7)	19 (1.4)	1,353 (100.0)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8.4%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건수 1,353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1,072건(79.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1,353건 중 1,258건(93%)을 차지하였다.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60 (4.4)	4 (0.3)	1 (0.1)	0 (0.0)	1 (0.1)	66 (4.9)
남	1,072 (79.2)	116 (8.6)	23 (1.7)	5 (0.4)	42 (3.1)	1,258 (93)
미상	3 (0.2)	0 (0.0)	0 (0.0)	0 (0.0)	26 (1.9)	29 (2.1)
총계	1,135 (83.8)	120 (8.9)	24 (1.8)	5 (0.4)	69 (5.1)	1,353 (100.0)

##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10명 중 5명 본인이 직접 상담, 10명 중 4명은 대리인이 상담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58건으로 56.0%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전체 42.8%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전체 대리인 상담의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친구가 12.6%, 데이트 상대 12.2%로 뒤를 이었다.

특히 데이트 상대인 대리인 상담은 2011년, 2012년 전체 대리인 상담의 7%대에서 2013년 10%대로 증가하였고, 2015 년도에 이어 올해도 10%대를 차지하였다.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단위: 건(%)〉

전체상담 건수	본인	대리인									본인/ 대리인 (함께 상담)	미상 (가해자 포함)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사회 복지 기관	기관 · 단체	기타	미상		
1,353 (100.0)	758 (56)	270 (20.0)	71 (5.2)	74 (5.5)	53 (3.9)	42 (3.1)	16 (1.2)	25 (1.8)	28 (2.1)	0 (0.0)	16 (1.2)	0 (0.0)
579 (42.8)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 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표5. 피해 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에서는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543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426건, 31.5%)이 뒤이었다. 이는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피해 유형은 성희롱(2016: 179건, 13.2% - 2015: 151건, 11.4%), 통신매체이용음란(2016: 3건, 2.6% - 2015: 40건, 3.0%), 카메라이용촬영(2016: 58건, 4.3% - 2015: 50건, 3.8%)이며, 강제추행(2016: 543건, 40.1% - 2015: 496건, 38%)과 강간(2016: 297건, 22.0% - 2015: 262 건, 20.4%)피해 상담은 작년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표5. 피해 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피 해 자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3 (0.2)	6 (0.4)	0 (0.0)	0 (0.0)	0 (0.0)	9 (0.6)	426 (31.5)
	강간	193 (14.3)	60 (4.4)	31 (2.3)	7 (0.5)	6 (0.4)	297 (22.0)	
	준강간	82 (6.1)	8 (0.6)	2 (0.1)	0 (0.0)	0 (0.0)	92 (6.8)	
	강간미수	25 (1.8)	1 (0.1)	2 (0.1)	0 (0.0)	0 (0.0)	28 (2.1)	
강제 추행	강제추행	353 (26.0)	67 (5.0)	45 (3.3)	25 (1.8)	5 (0.4)	495 (36.5)	543 (40.1)
	준강제 추행	43 (3.2)	4 (0.3)	0 (0.0)	0 (0.0)	1 (0.1)	48 (3.6)	
성희롱		167 (12.3)	7 (0.5)	3 (0.2)	2 (0.1)	0 (0.0)	179 (13.2)	
통신매체이용음란		27 (2.0)	6 (0.4)	1 (0.1)	0 (0.0)	1 (0.1)	35 (2.6)	
카메라이용촬영		50 (3.7)	7 (0.5)	0 (0.0)	0 (0.0)	1 (0.1)	58 (4.3)	
스토킹		48	1	0	0	0	49	

	(3.5)	(0.1)	(0.0)	(0.0)	(0.0)	(3.6)
음화등의 제조유포	0 (0.0)	1 (0.1)	0 (0.0)	0 (0.0)	0 (0.0)	1 (0.1)
미상	36 (2.7)	11 (0.8)	8 (0.6)	1 (0.1)	6 (0.4)	62 (4.6)
성폭력 계	1027 (75.9)	180 (13.3)	92 (6.8)	35 (2.5)	20 (1.5)	1,353 (10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3.9%**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가해유형 중 강제추행이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31.5%, 성희롱이 13.3%로 집계 되었다.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는 1,135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하고 있다.

〈표6. 가해 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가해자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미수	특수강간	5 (0.4)	3 (0.2)	0 (0.0)	0 (0.0)	1 (0.1)	9 (0.7)
	강간	239 (17.7)	38 (2.8)	7 (0.5)	0 (0.0)	13 (1.0)	297 (22.0)
	준강간	81 (6.0)	4 (0.3)	0 (0.0)	0 (0.0)	7 (0.5)	92 (6.8)
	강간미수	26 (1.9)	1 (0.1)	0 (0.0)	0 (0.0)	1 (0.1)	28 (2.1)
강제추행	강제추행	412 (30.1)	50 (3.7)	12 (0.9)	4 (0.3)	17 (1.3)	495 (35.2)
	준강제추행	48 (3.5)	0 (0.0)	0 (0.0)	0 (0.0)	0 (0.0)	48 (3.5)
성희롱		166 (12.3)	7 (0.5)	2 (0.1)	1 (0.1)	3 (0.2)	179 (13.2)
통신매체이용음란		20 (1.5)	8 (0.6)	0 (0.0)	0 (0.0)	7 (0.5)	35 (2.6)
카메라이용촬영		49 (3.6)	4 (0.3)	0 (0.0)	0 (0.0)	5 (0.4)	58 (4.3)
스토킹		48 (3.5)	1 (0.1)	0 (0.0)	0 (0.0)	0 (0.0)	49 (3.6)
음화등의 제조유포		1 (0.1)	0 (0.0)	0 (0.0)	0 (0.0)	0 (0.0)	1 (0.1)
미상		40 (3.0)	4 (0.3)	3 (0.2)	0 (0.0)	15 (1.1)	62 (4.6)
성폭력 계		1,135 (83.9)	120 (8.9)	25 (1.8)	5 (0.4)	69 (5.1)	1,353 (10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1%**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178건(87.1%)으로 가장 많다. 피해 연령 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57건(34.8%)으로, 성인 피해의 약 1/3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총 48건(26.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총 36건(20.1%)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각각 46건(49.9%), 20건(55.5%)로 가장 높았다.

2015년도 통계와 비교하여 수치 차이를 드러내는 관계 유형은 ‘직장’, ‘서비스제공자’, ‘주변인의 지인’ 관계로, 작년에 비해 건수로는 각각 32건, 23건, 22건 상승하였다. 이에 반하여 ‘친족, 친·인척’과 ‘모르는 사람’ 관계는 각각 50건, 18건 감소하였다.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계	유형	이는 사람 1,178(87.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37(10.1)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 원/학 원	주변 인의 지인	소개 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 척													
2016년		118 (8.7)	19 (1.4)	368 (27.2)	141 (10.4)	43 (3.2)	63 (4.7)	78 (5.8)	160 (11.8)	35 (2.6)	102 (7.5)	11 (0.8)	40 (3.0)	101 (7.5)	74 (5.5)	1,353 (100.0)
2015년		166 (12.7)	21 (1.6)	336 (25.7)	135 (10.3)	42 (3.2)	72 (5.5)	55 (4.2)	150 (11.5)	23 (1.8)	80 (6.1)	11 (0.8)	19 (1.5)	119 (9.0)	79 (6.0)	1,308 (100)
2014년		107 (7.4)	94 (6.5)	300 (20.7)	130 (9.0)	55 (3.8)	118 (8.1)	60 (4.1)	120 (8.3)	31 (2.1)	109 (7.5)	19 (1.3)	31 (2.1)	132 (9.1)	144 (10.0)	1,450 (100)
성인 (20세 이상)		24 (2.3)	9 (0.9)	357 (34.8)	131 (12.8)	30 (2.9)	36 (3.5)	67 (6.5)	97 (9.4)	18 (1.8)	80 (7.8)	10 (1.0)	36 (3.5)	79 (7.7)	53 (5.2)	1,027 (100.0)
청소년 (19세-14세)		31 (17.3)	5 (2.8)	10 (5.6)	8 (4.5)	8 (4.5)	16 (8.9)	8 (4.5)	48 (26.8)	4 (2.2)	14 (7.8)	1 (0.6)	2 (1.1)	16 (8.9)	8 (4.5)	179 (100.0)
어린이 (13세-8세)		44 (47.8)	2 (2.1)	0 (0.0)	1 (1.1)	5 (5.4)	7 (7.6)	2 (2.2)	14 (15.2)	4 (4.3)	3 (3.3)	0 (0.0)	2 (2.2)	6 (6.5)	2 (2.2)	92 (100.0)
유아 (7세 이하)		17 (47.2)	3 (8.3)	0 (0.0)	0 (0.0)	0 (0.0)	3 (8.3)	0 (0.0)	0 (0.0)	9 (25.0)	4 (11.1)	0 (0.0)	0 (0.0)	0 (0.0)	0 (0.0)	36 (100.0)
미상		2 (10.5)	0 (0.0)	1 (5.3)	1 (5.3)	0 (0.0)	1 (5.3)	1 (5.3)	1 (5.3)	0 (0.0)	1 (5.3)	0 (0.0)	0 (0.0)	0 (0.0)	11 (57.9)	19 (100.0)

##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16년 상담을 의뢰받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심리·정서 지원이 804건(59.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법적 지원이 610건(45.1%)을 차지하였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상담 및 법률서비스기관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본 상담소에서의 면접상담 및 심리상담기관 연계로 이어지고 전화 지속상담 등을 포함하는 지원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위급상황에서는 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고소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기타는 내담자를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단체 등으로 연계한 건이다.

〈표8. 피해자 지원내용〉

〈단위: 건(%)〉 (중복표기)

전체상담횟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1,353 (100.0)	610 (45.1)	12 (0.9)	31 (2.3)	804 (59.4)	3 (0.2)	210 (15.5)
		44 (3.3)				

## 9)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 세부 통계

### 9-1.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96.4%는 여성, 그 중 아동과 청소년이 74.5%

친족성폭력은 2016년 본 상담소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353건 가운데 137건(10.1%)이며,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은 총 137건 가운데 여성이 132건(96.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24%, 청소년이 26.3%, 어린이가 33.6%, 유아 14.6%로 성인이전에 피해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9-1. 친족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이하)	미상	총계
여	31 (22.6)	34 (24.8)	46 (33.6)	19 (13.9)	2 (1.5)	132 (96.4)
남	2 (1.5)	2 (1.5)	0 (0.0)	1 (0.6)	0 (0.0)	5 (3.6)
총계	33 (24.1)	36 (26.3)	46 (33.6)	20 (14.5)	2 (1.5)	137 (100.0)

### 9-2. 친족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97.9% 남성, 가해자의 72.9%가 성인

〈표9-2. 친족성폭력 가해자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 이전에 74.5%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가해자의 연령은 72.9%가 성인이며, 남성인 가해자가 137건 중 134건(97.9%)이었다.

〈표9-2. 친족성폭력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이하)	미상	총계
여	3 (2.1)	0 (0.0)	0 (0.0)	0 (0.0)	0 (0.0)	3 (2.1)
남	97 (70.9)	24 (17.5)	11 (8.0)	0 (0.0)	2 (1.5)	134 (97.9)
총계	100 (73.0)	24 (17.5)	11 (8.0)	0 (0.0)	2 (1.5)	137 (100.0)

### 9-3. 친족성폭력 피해 가운데 친부와 의부에 의한 피해 3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촌에 의한 피해 19.7%, 삼촌과 친형제에 의한 피해 15.3% 차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2013년 6월 19일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전의 피해도 비친고죄에 해당된다. 또한 친족의 범위 또한 법체계 내에서 확장되어 왔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상담소에 2016년도에 집계된 통계에서는 법적으로 친족에 해당하는 피해 상담 총 137건 중 친부나 친형제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의한 피해는 67건(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중 친부가 28건(20.4%), 의부가 18건(13.1%)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 삼촌 등 4촌 이내 혈족에 의한 피해가 51건(37.2%)을 차지하였다.

〈표9-3. 친족성폭력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 관계	친족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				총계
	친부	의부	친형제	조부	삼촌	사촌	형부	제부	의형제	친족외 인척	
성인 (20세이상)	4 (2.9)	6 (4.4)	2 (1.5)	1 (0.7)	6 (4.4)	5 (3.6)	4 (2.9)	2 (1.5)	0 (0.0)	3 (2.2)	33 (24.1)
청소년 (19세-14세)	10 (7.3)	8 (5.8)	5 (3.6)	0 (0.0)	4 (2.9)	4 (2.9)	0 (0.0)	0 (0.0)	1 (0.7)	4 (2.9)	36 (26.3)
어린이 (13세-8세)	8 (5.8)	3 (2.2)	12 (8.8)	0 (0.0)	9 (6.6)	12 (8.8)	0 (0.0)	0 (0.0)	0 (0.0)	2 (1.5)	46 (33.6)
유아 (7세 이하)	6 (4.4)	0 (0.0)	2 (1.5)	2 (1.5)	2 (1.5)	5 (3.6)	0 (0.0)	0 (0.0)	0 (0.0)	3 (2.2)	20 (14.5)
미상	0 (0.0)	1 (0.7)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2 (1.5)
총계	28 (20.4)	18 (13.1)	21 (15.4)	3 (2.2)	21 (15.3)	27 (19.7)	4 (2.9)	2 (1.5)	1 (0.7)	12 (8.8)	137 (100.0)

### 9-4. 청소년 피해 중 친족성폭력 피해 20.1%, 어린이 피해 중 49.9%, 유아 피해 중 55.5% 차지

본 상담소에 의뢰되는 친족성폭력 피해는 2014년 201건으로 전체 14%, 2015년 187건으로 14.3%, 2016년 137건 총 10.1% 정도이며, 특히 피해 연령이 성인 이전에 집중되어 있고 2016년도를 기준으로 13세에서 8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나 7세 이하인 유아의 경우 각 49.9%, 55.5%가 친족관계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9-4. 청소년·어린이·유아 내 친족성폭력 비율〉

〈단위: 건(%)〉



계	유형	아는 사람 1,178(87.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37(10.1)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성인 (20세 이상)	24 (2.3)	9 (0.9)	357 (34.7)	131 (12.8)	30 (2.9)	36 (3.5)	67 (6.5)	97 (9.4)	18 (1.8)	80 (7.8)	10 (1.0)	36 (3.5)	79 (7.7)	53 (5.2)	1,027 (100.0)	
청소년 (19세-14세)	31 (17.3)	5 (2.8)	10 (5.6)	8 (4.5)	8 (4.5)	16 (8.9)	8 (4.5)	48 (26.8)	4 (2.2)	14 (7.8)	1 (0.6)	2 (1.1)	16 (8.9)	8 (4.5)	179 (100.0)	
어린이 (13세-8세)	44 (47.8)	2 (2.1)	0 (0.0)	1 (1.1)	5 (5.4)	7 (7.6)	2 (2.2)	14 (15.2)	4 (4.3)	3 (3.3)	0 (0.0)	2 (2.2)	6 (6.5)	2 (2.2)	92 (100.0)	
유아 (7세 이하)	17 (47.3)	3 (8.3)	0 (0.0)	0 (0.0)	0 (0.0)	3 (8.3)	0 (0.0)	0 (0.0)	9 (25.0)	4 (11.1)	0 (0.0)	0 (0.0)	0 (0.0)	0 (0.0)	36 (100.0)	

### 9-5. 친족성폭력 피해 유형, 강간 32.8%, 강제추행 52.6% 피해에 집중되어 있어

친족성폭력 피해의 경우 신체접촉을 통한 가해행위가 주된 비율을 차지하였다. 강간 및 강간 미수 피해의 경우 총 45건(32.8%)를, 강제추행의 경우 72건(52.6%)으로 피해 유형이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표9-5. 친족성폭력 피해 연령·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5 (32.8)
	강간	8 (5.8)	12 (8.8)	15 (10.9)	6 (4.4)	0 (0.0)	41 (29.9)	
	준강간	1 (0.7)	0 (0.0)	0 (0.0)	1 (0.7)	0 (0.0)	2 (1.5)	
	강간미수	2 (1.5)	0 (0.2)	0 (0.0)	0 (0.0)	0 (0.0)	2 (1.5)	
강제추행	강제추행	12 (8.8)	19 (13.9)	25 (18.2)	12 (8.8)	2 (1.5)	70 (34.8)	72 (52.6)
	준강제추행	1 (0.7)	0 (0.0)	0 (0.0)	1 (0.7)	0 (0.0)	2 (1.5)	
성희롱		4 (2.9)	0 (0.0)	1 (0.7)	1 (0.7)	0 (0.0)	6 (4.4)	
통신매체이용음란		1 (0.7)	0 (0.0)	0 (0.0)	0 (0.0)	0 (0.0)	1 (0.7)	
카메라이용촬영		0 (0.0)	1 (0.7)	0 (0.0)	0 (0.0)	0 (0.0)	1 (0.7)	
스토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음화등의 제조유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상		4 (2.9)	4 (2.9)	4 (2.9)	0 (0.0)	0 (0.0)	12 (8.8)	
성폭력 계		33 (24.1)	36 (26.3)	45 (32.8)	21 (15.3)	2 (1.5)	137 (100.0)	

### 9-6. 친족성폭력 피해 지속 기간 : 1년 이상 피해가 21.8%, 5년 이상 피해 11.9%

친족성폭력 피해의 특성은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친족성폭력 상담사례 중 1년 이상의 피해가 30건(21.8%), 5년 이상의 피해가 11.9%를 차지하였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어린이일 때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처음부터 위계나 폭행, 협박을 동원하기보다는 마치 자연스러운 놀이나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면서 장기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1-2회의 피해 발생 비율도 3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피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9-6. 친족성폭력 피해 지속 기간 상담현황〉

〈단위: 건(%)〉

지속기간 피해	1-2회	1년 미만	1- 5년	5-10년	10년 이상	미상	총계
피해	47 (34.3)	32 (23.3)	15 (10.9)	11 (8.0)	4 (2.9)	28 (20.4)	137 (100.0)

### 9-7.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이전 대응 :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4.3%, 상담 전 조치 및 대응은 35.7%에 그쳐

상담 이전에 피해 생존자 당사자가 했던 대응이 상담 건수보다 적다는 현실은 그만큼 친족성폭력을 피해생존자가 신뢰하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본 상담소에 상담 의뢰한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137건 가운데, 법률이나 의료,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은 비율은 12건(8.7%) 정도이며 오히려 주변에 신뢰하는 개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기 시작하면서 상담소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경우,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많았다. 친족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생존자가 어린 시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적으로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8건)도 있었다.

〈표9-7. 친족성폭력 상담 이전 대응 방법〉

〈단위: 건(%)×중복표기〉

친족성폭력 상담 건수	상담 전 조치 및 대응 49 (35.7%)					
	법적대응	의료기관	기관 내 대응	주변인도움요청	기타	사과요구
137 (100.0)	6 (4.3)	4 (2.9)	2 (1.4)	24 (17.5)	5 (3.6)	8 (5.8)

### 9-8. 친족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제언 :

2017년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된 경우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2017.01.26. 정부정책브리핑) 하지만 친부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구성원에게 성폭력피해를 입어 주거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치 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막기 위하여 주변 가족들에 의한 2차 피해<sup>1)</sup>가 발생하기 쉬운 가족과의 분리와 재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변경하여 위치 노출을 방지한다고 하여도 (컴터 등의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가령, 성인이 되어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위하여 주거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이주한 주소지를 가해자나 비가해가족구성원이 열람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피해생존자 본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고소를 하였을 경우는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사건처분결과증명서, 컴퓨터에 입소한 경험이 있을 시 가정폭력(성폭력 포함)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지원만 받았을 경우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신청과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상 친족성폭력이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 가정폭력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라 형법상에 규정된 피해만을 한정시키고 있고, 공무원의 행정 실행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주에 친족성폭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겨 신청을 반려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행정 당국에서 친족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생존자가 법적해결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되며 친족성폭력을 주민등록법 상 가정폭력과 분리되어 따로 명시 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sup>2)</sup>

친족성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 문제이기에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과 같이 단기의 지원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피해 예방과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6년도 본 상담소 통계에서 친족성폭력피해의 경우 상담 이전 조치 및 대응이 35.7% 불과하고 1년 이상의 피해 지속기간이 42.4%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생존자들이 피해를 즉각 호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 및 주거변경과 같이 적극적인 해결을 한 뒤에도 원가족에 의한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상담소의 경우, 부설 컴퓨터 열람터에서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 주거·법률·의료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권리 보장, 정책제안 등의 활동 외에도 퇴소자 지원 사업을 중요하게 가져나가고 있다.<sup>3)</sup>

2016년도 뿐 아니라, 본 상담소의 전체 통계 중 친족성폭력피해는 매년 꾸준히 10%대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실제 상담소에 상담문의를 하는 대부분의 피해생존자들은 개인이 겪는 특수한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것은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역량, 피해 생존자의 권리 보장과 치유회복을 위한 제도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상담소와 같이 피해생존자 지원 현장을 비롯하여 전 사회적으로 친족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1) 2016년 상담소에 의뢰된 상담 사례에서도 친부나 친형제가 가해자일 경우 친모나 주변 친인척에게 피해를 알렸을 때 화를 내거나 믿어주지 않거나 고소해도 소용없다며 협박을 하거나 가족을 위하여 덮고 넘어가자 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말이 망상이나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취급하기도 하였으며, 친모가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딸에게 그럴 수도 있는 것’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2) 전국성폭력피해보호시설협의회가 정책 개선을 위하여 활동중이다.  
3)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이매진(2014) 참조

친족성폭력피해자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혈연가족에 의하여 겪을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 10) 친밀한 관계<sup>4)</sup> 내 성폭력 상담 세부 통계

### 10-1.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자의 94.8%가 여성, 성인 여성은 84.1%

2016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1,353건 중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195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총 164건(84.1%)로 가장 많은 비율이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인 여성이 15건(7.7%), 8-13세 해당하는 피해자도 채팅과정에서 6건(3%)정도 보고되었다.

〈표10-1.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미상	총계
여	164 (84.2)	15 (7.7)	5 (2.5)	1 (0.5)	185 (94.9)
남	8 (4.1)	1 (0.5)	1 (0.5)	0 (0.0)	10 (5.1)
총계	172 (88.3)	16 (8.2)	6 (3.0)	1 (0.5)	195 (100.0)

### 10-2.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가해자의 92.3%가 남성, 성인 남성은 85.6%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2.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자가 청소년 남성, 성인 여성인 경우도 동일하게 14건(7.2%)으로 집계되어 친밀한 관계 내 피해 양상이 성별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0-2.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수 (%)

4) 여기 말하는 친밀한 관계란 연애 관계를 포함하여 연애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과정, 연애관계 종료 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관계 내 폭력의 다양한 양상 가운데 성폭력 피해(중복된 다양한 형태의 피해 포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미상	총계
여	14 (7.2)	0 (0.0)	1 (0.5)	14 (7.2)
남	166 (85.1)	14 (7.2)		180 (92.3)
총계	180 (92.3)	14 (7.2)	1 (0.5)	195 (100.0)

### 10-3.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45.6%, 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20.9%

본 상담소에서는 2016년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다음 표와 같이 전배우자, 현배우자, 동거인, 전 데이트 상대, 현 데이트 상대를 비롯하여 관계를 맺게 된 과정이나 동기가 반영된 동호회, 소개, 채팅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총 195건 중 89건(45.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 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가 41건(20.9%)였다. 그 외에도 채팅과정에서의 피해도 28건(14.3%)였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의 피해가 절반 정도(28건 중 12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10-3.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계	아는 사람								총계
	전 배우자	현 배우자	동거인	전 데이트상대	현 데이트상대	채팅	동호회	소개	
성인 (20세이상)	3 (1.5)	5 (2.5)	2 (1.0)	86 (44.1)	37 (19)	15 (7.7)	14 (7.1)	10 (5.1)	172 (88.2)
청소년 (19세-14세)	1 (0.5)	0 (0.0)	0 (0.0)	4 (2.0)	3 (1.5)	7 (3.8)	1 (0.5)	1 (0.5)	16 (8.2)
어린이 (13세-8세)	0 (0.0)	0 (0.0)	0 (0.0)	0 (0.0)	1 (0.5)	5 (2.5)	0 (0.0)	0 (0.0)	6 (3.1)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0 (0.0)	0 (0.0)	1 (0.5)
총계	4 (2.0)	5 (2.5)	2 (1.0)	89 (45.6)	41 (21)	28 (14.3)	15 (7.6)	11 (5.6)	195 (100.0)

### 10-4.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중복피해 발생 비율 높아: 성폭력 외에 협박 10.3%, 폭행 6.0%, 명예훼손 및 모욕 6.7% 피해 동반

친밀한 관계 내 피해는 성폭력 외 다양한 폭력 피해가 중복하여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성폭력 외에 협박 (29건, 10.3%), 폭행(17건 6.0%), 명예훼손(8건, 2.8%), 모욕(11건, 3.9%) 등의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동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10-4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 유형 상담현황〉

〈단위: 건(%)〉 (중복표기)

피해유형		건수	계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85 (30.3)
	강간	67 (23.9)	
	준강간	14 (5.0)	
	강간미수	4 (1.4)	
강제 추행	강제추행	25 (8.9)	30 (10.6)
	준강제추행	5 (1.7)	
성희롱		8 (2.8)	
통신매체이용음란		11 (3.9)	
카메라이용촬영		40 (14.2)	
스토킹		34 (12.1)	
음회등의 제조유포		1 (0.35)	
성폭력(미상)		2 (0.7)	
명예훼손		8 (2.8)	
모욕		11 (3.9)	
협박		29 (10.3)	
갈취		1 (0.35)	
폭행		17 (6.0)	
역고소		1 (0.35)	
미상		2 (0.7)	
계		280 (100.0)	

**10-5.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상담 이전 대응 방법: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16.9%, 상담 전 조치 및 대응은 45.6%에 그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상담 전 조치 및 대응 비율이 45.6%로 10명 중 5-6명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였다.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이른 경우도 33건 (16.9%)에 이르렀으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양상이 다양하면서 입증이 확실한 폭행, 협박,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피해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신고 후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대처, 고소 이후에 겪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9-5.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상담 이전 대응 방법〉

〈단위: 건(%)〉 (중복표기)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법적 대응	의료적 조치	기관 내 대응	주변인 도움요청	가해자에게 사과요구	기타
195 (100.0)	33 (16.9)	8 (4.1)	7 (3.5)	22 (11.2)	12 (6.1)	7 (3.5)

## 11) 스토킹 피해 상담 세부 통계

### 11-1. 스토킹 피해자, 피해자의 89.8%가 여성, 97.8%는 성인여성

2016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스토킹 피해 상담은 총 49건으로 그 중 성인 여성 피해가 43건(87.8%)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 피해자는 44건(89.8%)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성별을 상대로 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표11-1. 스토킹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총계
여	43 (87.8)	1 (2.0)	44 (89.8)
남	5 (10.2)	0 (0.0)	5 (10.2)
총계	48 (98.0)	1 (2.0)	49 (100.0)

### 11-2. 스토킹 가해자 89.8%가 남성, 성인 남성은 87.8%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성인남성(총49건 중 43건(87.8%))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스토킹이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1-2. 스토킹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총계
여	5 (10.2)	0 (0.0)	5 (10.2)
남	43 (87.8)	1 (2.0)	44 (89.8)
총계	48 (98.0)	1 (2.0)	49 (100.0)

### 11-3.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이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93.8%, 전·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 69.2%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관계가 14.2%로 뒤이어

스토킹 피해는 총 49건 중 3건을 제외한 46건(93.8%)가 이는 사람에게 의하여 발생하였고, 전 데이트상대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30건(61.1%)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 내 관계도 14건(14.2%)을 차지하였다. 스토킹은 연애편제나 직장 내 관계 외에도 동호회 1건, 동네사람 1건, 주변 지인 2건, 학교 관계 1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은 오히려 4%에 불과할 정도로 데이트 관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표11-3. 스토킹 피해 연령별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 상담현황〉

〈단위: 건(%)〉

계	유형	아는 사람 46 (93.8)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전 데이트상대	현 데이트상대	동호회	동네 사람	주변의 지인	직장			
성인 (20세이상)	29 (59.2)	4 (8.2)	1 (2.0)	1 (2.0)	2 (4.1)	7 (14.3)	1 (2.0)	2 (4.1)	1 (2.0)	48 (98)
청소년 (19세-14세)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
총계	30 (61.2)	4 (8.2)	1 (2.0)	1 (2.0)	2 (4.1)	7 (14.3)	1 (2.0)	2 (4.1)	1 (2.0)	49 (100.0)

#### 11-4. 스토킹 피해 양상: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 행위가 동반되어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경향 보여

스토킹 피해는 법적으로 규제되는 형태 외에도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 행위가 동반되며 지속되는 형태를 보이며, 총 49건의 스토킹 상담 건수의 중복피해 포함 총 118건의 피해 유형이 집계 되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하는 행위와 거주지나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는 행위였다. 또한 SNS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형태도 있었으며, 괴롭힘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태의 협박이 병행되는 경우가 17건 (14.4%)을 차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감시 혹은 유출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이버 공간 상 명예훼손도 동반되는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11-4. 스토킹 피해 양상 상담현황〉

〈단위: 건(%)×중복포함〉

피해유형		건수
강간		3 (2.5)
강제추행		2 (1.6)
통신매체이용음란		2 (1.6)
<b>카메라이용촬영</b>		<b>5 (4.2)</b>
스토킹	미행	1 (0.8)
	거주지나 직장에 지속적으로 선물 보내기	3 (2.5)
	<b>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문자, 전화, 우편, 카카오톡, 이메일)</b>	<b>23 (19.4)</b>
	<b>거주지나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기</b>	<b>15 (12.6)</b>
	피해자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 특정 내용물을 피해자가 문을 열면 잘 보이게 걸어두기	1 (0.8)



	번호 변경 후에도 지속 연락	2 (1.6)
	개인정보 감시	1 (0.8)
	개인정보 유출	2 (1.6)
	이사 후에도 집에 찾아옴	1 (0.8)
	<b>SNS상 괴롭힘</b>	<b>4 (3.3)</b>
	주변사람들 괴롭힘	3 (2.5)
	개인정보 집요하게 묻기	2 (1.6)
<b>협박</b>	불륜관계를 주변과 자녀에게 알리겠다고 엄포	<b>17 (14.4)</b>
	성관계 사실 폭로하겠다고 엄포	
	흥기 들고 직장 찾아와 협박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시도	
	가해자 자신의 범죄전력 바탕으로 협박	
	가족을 괴롭히겠다고 협박	
	카메라 촬영물 유포 협박	
	여성의 임신중단 전력 유포 협박	
<b>폭행</b>		<b>4 (3.3)</b>
갈취	1 (0.8)	
<b>모욕</b>		<b>6 (5.0)</b>
<b>명예훼손</b>		<b>7 (5.9)</b>
기물파손	1 (0.8)	
공연음란	1 (0.8)	
미상	1 (0.8)	
<b>계</b>		<b>118 (100.0)</b>

11-5.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 3개월 이상 피해 지속 38.7% 차지

스토킹 피해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총 49건 중 19건(38.7%)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1년 이상 지속된 피해 건수도 11건(22.4%)을 차지하였다.

<표11-5.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 상담현황>

<단위: 건(%)>

지속 기간 피해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이상	미상	총계
스토킹	10 (20.4)	7 (14.3)	8 (16.3)	5 (10.2)	3 (6.1)	2 (4.1)	1 (2.0)	13 (26.5)	49 (100.0)

11-6. 스토킹 피해 상담 이전 대응 방법: 법적인 대응 14.2%, 상담 전 조치 대응 53%

스토킹 피해 상담 이전 조치 대응 비율은 26건(53%)에 그쳤고, 대다수가 가해자의 요구를 일정정도 받아주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개인적인 대응을 하다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대처 방식을 알고자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였다. 스토킹 피해 상담의 특이 점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조치(접근금지가처분이나 신변보호 요청 등) 문의가 많다는 점이다. 그만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나 두려움이 커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법적 대응을 취한 경우는 7건(14.2%) 불과하였고 법적대응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재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 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지속 연락을 취하여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여 112에 신고한 경우 직접 찾아오면 연락을 달라는 등의 안내를 받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와 사적으로 잘 풀리는 조언을 받았으며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6개월 이상 가해자에 의한 연락이 지속되어 경찰에 호소하고 전화상으로 경고 조치로 일시적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대응방법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표11-6. 스토킹 피해 상담 이전 대응 방법〉

〈단위: 건(%) (중복포함)〉

스토킹 상담 건수	법적대응	의료적 조치	기관내 대응	주변인도움요청	가해자에게 사과요구
49 (100.0)	7 (14.2)	0 (0.0)	0 (0.0)	18 (36.7)	1 (2.0)

### 11-7. 스토킹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제언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6년도 본 상담소에 의뢰된 상담 결과 89.8%가 여성으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경향이 높은 성별화된 폭력이다. 이에 그 간 피해자 지원 단체 및 반성폭력 운동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이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도움이 되기 어렵고, 스토킹 피해가 일상에서 지속되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 피해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2014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 주관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자료집 참조)

2016년도 본 상담소 상담 통계에서 드러난 바, 스토킹 전·현단계 관계 69.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토킹은 성별화된 폭력일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연애 관계를 여성이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만남을 원한다고 스토킹을 하고 살인, 폭행 및 상해 치사 사건 등의 강력 사건이 벌어지고, 인터넷 상 여성들이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면서 2016년 2월, 경찰에서 ‘연인 간 폭력 근절 TF’ 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강남 논현동 주차장에서 벌어진 상해치사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도 내에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스토킹 관련 법률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의 특성과 심각성에 주목하여 꾸준하게 관련 제도 신설 및 실질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마주하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현장 및 사법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